

##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회부 세출예산액 내역

가. 총괄

(단위: 천원)

구분	추가경정	기정예산	증감	
			금액	%
계	76,678,256	65,852,481	8,825,775	13.40
일반회계	51,447,888	45,890,297	5,557,591	12.11
특별회계	23,230,368	19,962,184	3,268,184	16.37

▷ 일반회계 전체예산 92,768,640천원에 대한 사도위 비율 55.4%

▷ 특별회계 전체예산 34,718,528천원에 대한 사도위 비율 66.9%

###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 제출자 : 2001. 6. 5-----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0. 6. 1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3회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1. 6. 19) 상정,심사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1. 6. 20) 상정,의결

## 3. 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가경정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
계	51,447,888	45,890,297	5,557,591	12.11
사회개발	43,636,265	40,942,973	2,693,292	6.58
경제개발	7,184,701	4,907,423	2,277,278	46.40
민방위비	92,279	39,901	52,378	131.27
지원 및 기타경비	534,643	0	534,643	-

○ 부서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가경정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
계	51,447,888	45,890,297	5,557,591	12.11
사회산업국	43,100,753	40,406,830	2,693,923	6.67
사회복지과	30,739,853	28,867,570	1,872,283	6.49
환경청소과	11,309,510	10,627,790	681,720	6.41
지역경제과	959,322	832,402	126,920	15.25
교통행정과	92,068	79,068	13,000	16.44
도 시 국	8,347,135	5,483,467	2,863,668	52.22
건 설 과	6,564,826	4,292,126	2,272,700	52.95
도시개발과	1,034,812	855,094	179,718	21.02
허가민원과	496,345	192,295	304,050	158.12
지 적 과	251,152	143,952	107,200	74.47

## 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소관)

(단위: 천원)

회 계 별	추가경정	기정예산	증 금 액	감 %
계	23,230,368	19,962,184	3,268,184	16.37
의 료 보 호 기 금	11,368,815	11,345,486	23,329	0.20
주 민 소 득 지 원 기 금	951,107	401,507	549,600	136.88
주 차 장	6,728,776	6,526,580	202,196	3.09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2,253,449	217,611	2,035,838	935.54
장 립 유 수 지 이 설 사 업	1,928,221	1,471,000	457,221	31.08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927억6천8백6십4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주재원은 406억8천8백7십8만1천원,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520억7천9백8십5만9천 원이며 기정예산에 비해 86억8천4십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분석해보면 세외수입 중 항진핵제 징수교부금인 경상적세외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1억6백 3십6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이 25 억7천4백4만2천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 나. 세출분야.

일반회계 세출분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총규모는 514억4천7백만원

으로 그중 사회산업국 4개과의 세출예산은 431억원이며, 도시국 4개과의 세출예산은 83억4천7백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55억5천8백만원인 12.1%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사회개발비에서 26억9천3백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2억7천7백만원, 민방위비에서 5천2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5억3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주요증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주요시책, 사업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① 환경미화원, 건설종사원, 하수도 준설종사원 등에게 지급되는 기본제정비는 인건비 상승등 증가요인에 의거 급변 추경예산에 5억9백만원이 반영되었으므로 차당항 사유라고 사료되며
- ② 사회복지과 예산에는 저소득주민을 보호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재원도 국시비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자매정신요양원과 마리아구호소 부랑아시설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3억7천5백6십4만5천원, 사회복지관운영비 5천7만7천원, 영세치매노인세대지원금 4백2십만원과 노인복지시설생계비 1억6천2백5만2천원을 비롯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한 장비구입비 5억원, 장애인생계비와 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등 사회보장적수혜금 4천2백3만5천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음을 감안, 장애인과 노인등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저소득 영세서민들의 자활의지배양과 생계지원대책으로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비3억7천3백7십7만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지원금 1억8천3백6십만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수급자의 생계

지원 및 자활의지배양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③ 환경청소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승학산제석골 쉼터에 무방류 완전 발효 소멸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시비보조금 1천2백5십만원, 구비 1천2백5십만원 총 2천5백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비가 톤당 2만4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조정됨에 따라 차인액 2억3천2백5만원이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용 차량구입비 1천5백만원과 소각시설철거비 2백만원이 본 예산대비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반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지연으로 운영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운영비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④ 지역경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관리원과 물운대관리원에게 지급되는 기본제경비는 인건비상승등 증가요인에 의거 일용인부임 1천3백5십만2천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 되었으므로 타당한 사유라고 사료되며 읍속도 주변꽃길 조성사업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한 발주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3천5백7십1만5천원이 내시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며 2000년 시설녹지사업으로 다대포 강변도로상에 조성된 무궁화 화단에 식재된 무궁화 1,235본에 대한 유지관리비 1천1백만원(시.구비 각550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해당부서장은 녹지대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위한 병충해 방제와 제초작업등 조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이동식 천막형 직거래장터 설치에 필요한 장비시설비 1천4백만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방치폐선처리척수가 10척에서 14척으로 증가됨에 따라 처리비 차인액 2천5십만원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내시를 받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누락된 산림병해충 방제시설비에 대하여는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6백7십2만7천원을 포함 금번 추경예산에 2천4백7십만4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풍, 장마등으로 유입된 해양쓰레기수거처리비 6백6십만원과 조립사업비 1백6십2만8천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된 반면 산림감시공익요원이 제대 및 미보충으로 130명에서 115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천3백7십6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⑤ 교통행정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림초등학교와 사하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보행을 위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시설비 1천3백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금후에도 초등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해당부서장은 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⑥ 다음은 건설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구축사업비 4천만원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감천1교 교량 보수공사비 6천만원은 재해대책관련 자체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므로 다가오는 우수기에는 재해없는 사하구가 되도록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 자체사업인 피정3동사~복개천간 도로개설공사와 하단1동 남도궁궐APT앞 도로개설공사, 구평본동~장림동간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한 감천옥녀봉 산복도로 개설공사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주민숙원 사업

으로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등 6억7천5백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금후 사업부서에는 건설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중기제정계획과 주민불편사항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인 장림2동사~지산유치원간 보도정비공사와 도로굴착 복구비, 맨홀유지관리와 사고 가로등 복구공사등 시설비 13억5천만원은 자체 예산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내민홍보등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⑦ 다음은 도시개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유지관리 시비보조사업으로 구평 성화원내 하수도설치공사와 장림 여중 뒤편 하수도 정비공사등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 1억3천8백만원이 내시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인 만큼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설계 및 시공등 전과정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흥티마을 공영개발사업시설부대비 1천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므로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등 전향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⑧ 다음은 허가민원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동 벽산하이츠타운 진입로변 토지매입에 따른 시설비 9천9백만원과 건축행정 전산화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6백8십5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전출금 1억9천7백만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⑨ 다음은 지적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와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도로변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시설비 3천5백만원이 당초 본예산에 신설되었으나 구자체사업이 시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됨에 따라 3천5백만원 전액 감액되고 내시된 시비보조금 9천1백만원과 구비 4천9백만원등 총1억4천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의료보호기금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규모는 347억1천8백만원으로 그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은 의료보호기금 113억6천9백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9억5천1백만원, 주차장 67억2천9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2억5천3백만원, 장립유수지이설사업 19억2천8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해 16.4%로인 32억6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분석하면 의료보호기금이 2천3백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이 5억4천9백만원, 주차장이 2억2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억3천6백만원, 장립유수지이설사업이 4억5천7백만원입니다.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사회복지과소관 (147~151페이지) 국시비보조금대상자에 대한 정밀조사 및 수혜자확대등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이 적게 되도록 검토(김명석, 장용회의원)
- 환경청소과소관 (160페이지) 소각시설철거비 예산에 있어 당초 소각로 설치비 예산과같이 낭비요인이 되므로 향후 이러한 예산낭비사례가 없도록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김명석, 이정도의원)



## 6. 토 론 요 지 : 없음

## 7. 수정안 요지(보고자 :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이해수의원)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1. 6. 20. 이해수의원의 4인

나. 수정이유 : 일부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한 삭감

○ 일반회계 : 51,447,888천원중 10,500천원을 삭감

《 삭감부분 전액 예비비 계상 》

○ 특별회계 : 23,230,368천원중 2,600천원을 삭감

《 삭감부분 전액 해당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

○ 합 계 : 76,678,256천원중 13,100천원을 삭감

《 삭감부분 전액 해당회계 예비비 계상 》

## 8. 심사내역(증감액 내용)

##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가경정	위원회 증감액		조정예산액
		증	감	
계	51,447,888	10,500	10,500	51,447,888
사 회 개 발	43,636,265	-	5,500	43,630,765
경 제 개 발	7,184,701	-	5,000	7,179,701
민 방 위 비	92,279	-	-	92,279
지원및기타경비	534,643	10,500	-	545,143

## 나.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추가경정	위원회증감액		조정예산액
		증	감	
계	23,230,368	2,600	2,600	23,230,368
의료보호기금	11,368,815	-	-	11,368,815
주민소득지원기금	951,107	-	-	951,107
주 차 장	6,728,776	2,600	2,600	6,728,776
주거환경 개선사업	2,253,449	-	-	2,253,449
장립유수지 이설사업	1,928,221	-	-	1,928,221

## 9. 심 사 결 과

가. 일반회계 세출분야 : 수정의결(삭감부분 10,500천원 ⇒ 예비비 계상)

나. 특별회계 세입분야 : 원안의결

다. 특별회계 세출분야 : 수정의결(삭감부분 2,600천원 ⇒ 해당특별회계 예비비계상)